

소방시설공사 착공(변경)신고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		2일	
특정소방 대 상 물	상호(명칭)			용도 구분			
	소재지			(전화번호:)			
	구조 지하 층, 지상 층, 개동						
	대지면적 m², 연면적 m², 바닥면적 m², 건축면적 m²						
	전체 소방시설						
관 계 인	성명(기관 또는 법인명)			(서명 또는 인)			
	주소			(전화번호:)			
	도급금액		도급형태	분리도급 [] 분리도급 예외 []			
	지급보증	계약이행미보증 [] 공사대금지급보증 [] 공사대금지급보증 예외 []					
소방시설 공사업자	상호(명칭)		등록번호		대표자		
	소재지			(전화번호:)			
	도급구분	원도급 [] 하도급 []	착공일		완공예정일		
	공사종류	신설 [] 증설 [] 개설 [] 이전 [] 정비 [] 그 밖의 공사 []					
	시공 소방시설						
책임시공 및 기술 관리 소방기술자	성명		수첩번호		분야/등급		
변경내용	구분	변경 전			변경 후		
	상호						
	등록번호						
	대표자						
	소재지	(전화번호:)			(전화번호:)		
시공자[]	정산금액	원		도급금액	원		
	설치되는 소방시설[]	종류					
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[]	성명	(수첩번호:)			(수첩번호:)		
	분야/등급						
	배치기간	~			~		

「소방시설공사사업법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착공(변경) 내용을 신고 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소방본부장/소방서장 귀하

작성방법

시공자 변경사항 신고 시 ‘정산금액’은 변경 전 시공자가 관계인에 대하여 정산받은 금액을 기재하고, ‘도급금액’은 변경 후 시공자가 받을 금액에 대하여 기재합니다.

첨부서류

1.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
2.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
3.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사본 1부
4. 설계도서 1부. 다만, 「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」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인 경우 또는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첨부된 설계도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5.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
- 가. 「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0조제1항 및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 사본 1부
- 나.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
- 1)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2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부
- 2)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 사본 1부
- ※ 변경신고인은 변경된 사항의 서류만을 첨부합니다.

수수료
없음

처분기준

공사업자는 착공신고 및 착공변경신고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,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 제9조제12호 및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,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처리절차

신고인

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

신고

접수

검토

결재

결과통보